#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0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임호선·염태영·권칠승

조인철 • 이상식 • 정준호

이연희 · 김병기 · 박해철

위성락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연 7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인원은 발견 및 복귀되고 있으나, 이 중 상당한 수의 사건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 및 발견을 위한 각종의 실질적인 조치 등 법적 근거·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인바, 실종성인 본래의 내용으로의 사건 접수나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의 조치가 불가하여 자살기도 등의 이유를 빌어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실무상 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통한 수사작용에 의존하게 되는 형편으로 발견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원인에 봉착하여 실종성인의 발견·복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실종성인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발견활동을 위한

조사와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 ·권한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성인", "특정 실종성인", "유전자 검사", "유전정보" 및 "신상정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실종성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 수립·추진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탐문 조사, 주변인물 진술 청취, 정보 조회 및 장비 활용 수색을 할 수 있고, 특정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인터넷주소·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과 출입·조사 및 관계인 질문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 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신고인 및 신고사항 등을 알려야 하고,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종성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 아.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25조).
- 자. 개인위치정보 등의 실종성인 발견 목적 외 이용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안 제26조).
- 차. 부당목적이나 허위내용의 신고인 등에게 경찰관서의 장이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

#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생 명·신체 및 사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실종성인"이란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
  - 나.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 2) 「군형법」에 따른 군무 이탈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 3)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람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구 조가 필요한 사람
- 2. "특정 실종성인"이란 실종성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자살의 의사 또는 계획을 표시하는 등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
  - 나. 실종 당시 실종성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긴급한 의료적 치료 또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발견이 요구 되는 사람
  - 다. 그 밖에 신고내용 및 실종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종성인 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발견이 요구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3.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 5.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실종성인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2. 실종성인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 3. 실종성인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 4. 제5조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운영
- 5.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 발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6.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 7.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활동 관련 기술 개발 및 장비의 보급
- 8. 제16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관련 유전정보의 관리
- 9. 실종성인의 복귀 절차 및 방법의 마련
- 10.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활동 및 복귀 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 11.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ㆍ복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종성인의 신고·발견 및 복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전문연구

- 제5조(실종성인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 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 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성인의 신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 수립·추진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정 취소와 지원 비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실종성인의 신고 및 조치

- 제7조(신고 접수) ①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당 신고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취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피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
  - 2. 피신고인의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시 · 장소 및 경위
  - 3. 피신고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4. 그 밖에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 해당 여부 판단과 발견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

- 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주변인물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현장 탐문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알게 된 사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종성인 등록의 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신고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 피신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고인을 실종성인으로 등록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신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피고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피신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3조제 2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재 확인 내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5.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해행위 또는 범죄에 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6. 다른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사 또는 조세·복지·보건 등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당사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경우
- 7. 그 밖에 실종성인의 등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부당신고 및 허위신고의 금지) 누구든지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닌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제1절 일반적인 실종성인 발견활동

- 제11조(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1. 주거지, 최종 목격된 장소 또는 실종성인이 소재하고 있다고 추 정되는 장소에의 탐문 조사
  - 2. 신고인 · 목격자 또는 실종성인 주변인물의 진술 청취

- 3. 실종성인의 소재 및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 4. 경찰견·드론·헬기 등 발견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한 수색
- 5.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 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경우
- 2. 자동차·열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
- 3.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철도·공항·항 만 또는 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 는 경우
- 4.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절 특정 실종성인 발견활동

제12조(특정 실종성인의 등록)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특정 실종 성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특정

실종성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13조(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 실종성인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 단 제공기관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개인

- 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파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개인에 대하여 특정 실종성인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이동경로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

여 수집된 정보

-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 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 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의 명칭
   연락처 주소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에 기재된
  의료행위 실시 일시
- ②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를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 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특정 실종성인 발견 업무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 실
- ④ 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파기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 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출입·조사 또는 질문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공무원" 으로 본다.

# 제3절 유전자검사 등

- 제16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견되지 아니한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의 채취를 실시할 수 있다.
  - 1. 가족으로부터 검사대상물의 채취

- 2. 실종성인이 실종 전에 착용·소지하였던 물건이나 거주하였던 장소에서의 검사대상물의 채취
- ②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 의 신상정보를 그 가족·소유자·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 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성인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 청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경찰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 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실종성인의 소재발 견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
  - ② 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각각의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계·검색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③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자, 제16조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자(이하

"검사대상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성인을 발견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실종성인을 발견하였을 때
- 2. 검사대상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 3.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 절차·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누구든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6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를 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 종성인과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 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제5장 실종성인 발견 시의 조치

- 제22조(실종성인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제7조에 따른 피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 제24조에서 같다)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실종성인에게 그 실종 신고와 관련한 신고인 및 신고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해당 실종성인으로부터 그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소재가 확인되거나 발견된 실종성인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종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현장출동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 요청을 받은 자살예방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소재를 확인한 때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종성인으로부터 그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신고인에게 발견·소재 확인의 사실 또는 그 확인한 일시·장소 및 상황 등을 통지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외에 해당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그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실종성인 등록 해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실종성인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실종성인이 발견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어 복귀하는 등 해당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우
  - 2. 실종성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 인된 경우
  - 4. 실종성인의 발견활동의 개시 이후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활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실종성인 등록 사항을 해제하는 때에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실종성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소재 등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 및 관련 사항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한다.
-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 2. 제7조에 따른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접수
  - 3. 제8조에 따른 실종성인 신고에 대한 조치
  - 4. 제9조에 다른 실종성인 등록 제한 사유의 확인
  - 5. 제11조에 따른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 6. 제12조에 따른 특정 실종성인의 판단 및 등록
  - 7.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조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⑦ 그 밖에 요구 자료의 범위 및 요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벌칙

- 제26조(벌칙) ①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경로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 2.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 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 5. 제21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제27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